

인천광역시 조례 (공 포)

□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□ 개정사유

- 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은 조례로 정하고 있고, 예외적으로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있으나,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도 집회일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며,
- 나. 상임위원회의 직무 중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,
- 다.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외에도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구성 결의안의 발의요건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매년도 의장이 수립하는 회기운영계획은 늦어도 1월 3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(제23조제3항)
- 나.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되, 선거가 있거나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해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제24조)
- 다.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 중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, 문화복지위원회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 소관 사무를 추가함(제26조제2항)
- 라.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종류를 정하고, 발의요건과 위원 정수를 정함(제30조제1항~제2항)
- 마. 강화고려역사재단 출범(2013. 7. 5)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출자·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함(부칙 제2조)

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직

2014년 1월 23일

인천광역시조례 제5324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1월 중에”를 “늦어도 1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정례회의 집회일)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
 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실시되거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6조제2항제1호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사목과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

사. (재)인천광역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

아. (사)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

제30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
2.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
3.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

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, 위원 정수,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출자·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출자·출연기관 대상기관란 중 “(재)인천국제교류센터”를 “(재)인천국제교류재단”으로 하고, “(재)인천문화재단” 다음란에 “(재)인천광역시강화고려역사재단”을 신설한다.